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3. 01. 27.

발 의 의 원 : 김정옥, 이태손

하병문, 이영애

전경원, 김지만

김재우, 김원규

조경구, 윤영애

이성오, 육정미

허시영, 박소영

의원(14명)

1. 개정 이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가장 가까이할 대구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제명)

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렬(안 제6조)

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 보호사업의 보완(안 제6조의2)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9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

- 4.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장은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 <삭 제> 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6. (생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삭 제> 7.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 8. ~ 10. (생략) 6. ~ 8.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 지와 같음)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삭 제>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 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 <u>입 지원</u> 12. (생략) 9. (현행 제12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 시장 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 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 입 지원
- 4.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관계 법 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장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 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제12조의3에서 이동 <2021. 7. 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 1. 26.>
 -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 야 한다.
- 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9. 1. 15.>
-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 · 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 · 제2항 · 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1.]